

##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 공고

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
2026년 6월 1일

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



### 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임용분야	임용직급	임용인원	근무기간	근무처	담당직무내용
직원	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	1명	1년 (주35시간)	장애인복지과 (장애인 활동지원사업운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장애인활동지원 사업운영</li><li>그 외 바우처 사업</li></ul>

- ※ 실적과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내에서 임용 기간 연장 가능
- ※ 임용일 : 2026. 8. 1. 예정(신원조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### 2. 법령 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 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1조의3 (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29조의3 (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)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-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
### 3. 응시 자격요건

- 공통 응시자격요건 (※ 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 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82조(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   - 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 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    - 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    - 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    - 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    - 사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
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
 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하는 비영리법인

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  
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- 지역·성별 : 제한 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인 자

○ 임용분야 응시자격요건

※ 응시희망자는 자격 및 경력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

임용분야 및 직급	응시자격요건
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	1.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(장애인)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공통우대조건	<p>【해당분야 경력인정범위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</li> <li>- 장애인복지분야 중 장애인바우처 사업(활동지원 등) 관련 분야 근무자 우대</li> </ul>

\* [임용예정 직무분야]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기관(복지관 등) 등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 등 관련분야의 실무 경력

※ 경력 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(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)

※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

## 4.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- 임용기간 :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(※ 근무실적 우수 시, 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)
- 근무조건 : 주 5일, 주 35시간 근무(월~금, 1일 7시간)

○ 보수수준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라 임용등급에 상응하는 보수 범위 내에서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, 최초 채용 시에는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. **\* 아래 금액은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**

[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(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4조 관련)] (연봉액, 단위: 천원)

구 분	상한액	하한액	근무시간 적용시 기본연봉액
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	54,678	28,943	25,325 (28,943천원×35/40)

-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공무원연금, 건강보험(장기요양보험 포함) 가입
- 마급은 9급 1호봉 기준 봉급연액 및 명절휴가비 연액, 정근수당 연액, 정근수당가산금 연액의 합산액을 하회할 수 없음
-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 한함) 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)

## 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26. 6. 8.(월) ~ 6. 12.(금) , (5일간 09:00 ~ 18:00)

나.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등기) **\*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**

- 방문접수는 근무시간(9시~18시/ 점심시간 12시~13시 제외)내 직접 제출
-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 찍힌 등기우편에 한함

\* 주소 : (01689)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, 1층 장애인복지과 자립생활팀(상계동, 노원구청)

다. 접수장소 :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자립생활팀 (구청 본관 1층)

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하여 사용

※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(마급 : 수수료 5,000원)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
(우편접수 시 반드시 우체국에서 5,000원 상당 통상환증서 구입 후 송부)

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※ **우편 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(☎02-2116-3313) - 서류 분실 방지 목적**

※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/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,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
○ 시험일정

내 용	일 정	장 소
응시공고	2026. 6. 1.(월) ~ 6. 12.(금)	
응시원서 접수	2026. 6. 8.(월) ~ 6. 12.(금)	방문·우편 접수
서류 전형	2026. 6. 17.(수)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	2026. 6. 19.(금) 예정	
면접시험	2026. 6. 23.(화) 예정	노원구청
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2026. 7. 6.(월) 예정	
최종합격자 발표	2026. 7. 29.(수) 예정	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
(단,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 
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)

※ 면접시험은 개최일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서류합격자 공고문을 통해 사전 확인 **必**

#### 가. 1차시험(서류전형) : 개별통보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 게시

- 접수된 응시원서 등 관련 제출서류 확인 후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#### 나. 2차시험(면접시험) :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 공고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
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비위면직자 등 사전조회에서 이상이 없으며, 노원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
#### 다. 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 공고

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**6개월 이내**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## 6. 제출서류

### ○ 응시원서(첨부 1) 1부

- 응시수수료(마급 5,000원) 수입증지 부착 (판매장소 : 노원구청 2층 재무과)
  - 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
  - ※ 채용기관이 수입증지 대리 발급 등의 업무를 하지 않음에 유의

### ○ 이력서(첨부 2)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<http://www.nhis.or.kr> 발급, 보험가입 전체기간,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- 자기소개서 (첨부 3) 1부
- 직무수행계획서 (첨부 4) 1부
-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 (첨부 5) 1부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(첨부 6) 1부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첨부 7) 또는 주민등록 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) 1부
-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(첨부 8) 1부 (해당자에 한함)
-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, 학위증서 (석사 이상) 또는 학위증명서 1부
 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  - ※ 사본 제출 가능 (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-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(이력서에 기재된 경력) 또는 재직증명서 1부
  -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(원본)으로 근무기관별 확인필(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에 한하여 인정(미제출 시 경력 미인정)
  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
  - 근무기간, 근무시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(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)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- 면허증·자격증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
## 7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원서는 노원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nowon.kr>) - [채용공고]에서 다운받아 사용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

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(이 경우 시험일정 등이 변경됨)
-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,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.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-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: 본인이 희망할 경우, 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,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.
- 기타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자립생활팀 (☎ 02-2116-3313)